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47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안상훈 · 고동진 · 김형동
송석준 · 정성국 · 우재준
김예지 · 박정하 · 한지아
배현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국민의 정의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된다면, 이는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 보호 수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은 물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수혜가 확인된 경우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까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될 것임.

이에 대통령과 공범관계(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 · 교사범 · 방조범에 대

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이러한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① 대통령은 자신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로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사실 또는 그 범죄사실과 기
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1. 그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2. 그 범죄사실의 교사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3. 그 범죄사실의 방조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②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또는 그 범죄사
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 기타 공적 기록에 의하여 특정 범죄사실의 수혜자였음이 명시
된 경우, 그 범죄사실의 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제9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특별사면”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제9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특별사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① 대</u> <u>통령은 자신이 피의자 또는 피</u> <u>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재판을</u> <u>받고 있는 범죄사실 또는 그</u> <u>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u> <u>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u> <u>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u> <u>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u> <u>1. 그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u> <u>형을 선고받은 자</u> <u>2. 그 범죄사실의 교사범으로</u> <u>형을 선고받은 자</u> <u>3. 그 범죄사실의 방조범으로</u> <u>형을 선고받은 자</u> <u>②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판결</u> <u>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또는 그</u> <u>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u> <u>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u> <u>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u> <u>는 자에 대하여도 특별사면을</u> <u>할 수 없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u>

	<u>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 기타 공적 기록에 의하여 특정 범죄사실의 수혜자였음이 명시된 경우, 그 범죄사실의 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u>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 경우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제9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 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 ----- ----- -----특

<u>별사면</u>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u>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제9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특별사면</u>-----.
---	---